2020년 3월 제67호
ISSN 1976-6041(On-Line)
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손장목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794 **FAX** 041-968-2989

권 두 언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사)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상훈 교수
전문가 제언	경찰의 수사권과 인권보장	(사)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오동석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수사를 위한 제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일 박사
해외 수사법제	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 황 박사
현장의 목소리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김달원 경위
연구소 소식	연구소 동정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사)한국경찰학회 회장 이 상 훈 교수*

책임수사, 인권경찰의 시험지를 받다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1만 경찰은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라며 환호했다. 경찰의 자존심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든 경찰관서와 기능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보니 이러한 표현도 과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95%가 넘도록 실질적으로 수사를 도맡아하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이런 숙원을 풀었으니 충분히 축하 받을 만도 하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취지와 검찰개혁 차원에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지 경찰의 인권수호 의지와 수사능력, 그리고 국민적 신뢰에 기초하여 자력으로만 이루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번 수사권의 독립이 그동안 검찰지휘에 가려졌던 경찰 수사의 난맥상을 여실히 내보이는 시련의 시간을 강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신감을 원년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경찰에게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지방토호세력이나 범죄조직 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준다는 의혹으로 경찰조직을 통째로 집어삼킬 정도의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감격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날 선 작두를 타는 기분으로 신발 끈을 바짝 매는 긴장감도 돌아야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하겠다.

책임수사의 본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한마디 말에 전부 담겨있다. 먼저, 과거 이중조사로 몸 고생에다 마음고생까지 감내해야 했던 피의자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수긍하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수사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환골탈태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 책임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로써의 민주적 통제는 경찰수사권의 강화에 상응하는 당연한 귀결로서 그 존재의의가 크다. 과거 검찰처럼 경찰 역시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험지를 받는 심정으로 원년(元年)을 시작해야 한다.

책임수사 원년[元年]의 의미

그러면 '책임 수사 원년'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책임(責任)'이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를 말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를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 의한 수사 개시를 의미한다. 수사권 남용에 따른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制裁)를 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적인 제재인 민사책임 혹은 형사책임 등의 법적 책임은 물론, 국민적 비난이라는 극형(極刑)을 이젠 온몸으로 감내해야 한다. 지휘를 받아서 지침대로 하면 본전은 하던 것을 이젠 수사책임을 피해 도망갈 그 어떤 곳도 없게 되었다.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자문단 위원

'수사(搜査)'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고자 하는 활동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범인을 찾는 활동에는 반드시 증거수집 단계에서 피의자 보호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등의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시작으로 각종 인신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대한민국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책임수사 원년(元年)이란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독립하여 밝히고 인권보호의 수호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하는 첫해이자, 과거 지탄을 받아오던 부실수사, 불법수사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미스트롯과 승리의 여신 니케(Nike)

대한민국을 트롯 광풍으로 몰고 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은 왼쪽 뺨에 유년시절 생긴 자국이 나이키 모양처럼 남아있다. 어릴 때 넘어져 3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크게 다쳤고 수술 후 흉터로 남아 진짜 콤플렉스였는데, 이번 '미스터트롯'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콤플렉스를 이겨낸 비결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감싸주고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몸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주변의 인정과 사랑으로 충분하게 치유될 수 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스스로 '내 얼굴에 나이키(Nike)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 신화에서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Nike)의 진정한 미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그의 얼굴은 트롯경연대회를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미관을 위한 성형수술을 결코 받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관점이 바뀌었던 것이다.

지난 66년의 경찰수사는 이번 책임수사 원년을 계기로 경찰수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 임영웅이 경연 중 부른 가수 노사연의 노래 '바램'의 가사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의 거의 전부를 해 왔으면서도 환갑을 넘기도록 숨죽여 온 경찰수사가 책임수사 원년을 맞으면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국민의 신망을 얻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경찰 책임수사 시대를 맞아 부실수사, 인권침해 수사의 콤플렉스를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 현장 수사관의 철두철미한 수사준칙으로 재정립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미소 짓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순간까지 가까스로 지켜온 경찰수사의 상처 난 자존심이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긴 세월 끈질기게 추구해 온 검·경수사권 조정 노력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것이라는 진심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의 진검승부, 인재 확보 전쟁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말미암아 경찰로 우수한 인재가 몰릴 것이라고들 한다. 과거와는 다른 경찰수사의 위상에 매력을 느낀 많은 인재들이 경찰조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찰조직의 분위기나 인사관행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녹록하지 않다. 일례로 경찰관서에 배치된 변호사 특채 경찰관들이 법률적으로 애매한 사건을 잘 해결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직과 인사가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성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경감으로 특채한 수사경찰이 배치되어 있지만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기대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문제다.

경찰청이 2014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직위에 총 5회에 걸쳐 20명씩 선발해 왔다. 그 이전에도 선발해 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지만 현재는 16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중도 퇴직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입직 출신과 지역을 고려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의 근무지를 감안하는 평가와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조직에서 실력만으로 승진하기란 그 불확실성이 엄청났던 셈이다. 까다로운 사건을 법률적 전문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참모조직의 조언자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수사경과의 좁은 승진경로는 외부조직으로의 탈출여지를 늘 두고 출근하는 그들의 현실에서도 느껴진다. 경찰조직이 이들을 보다 중용하고 이를 본 외부의 법률 및 수사 전문가들이 경찰조직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상 필수현장 보직부서 및 기간(동 규칙 제32조)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여, 승진하여 수사과장이 되지 않더라도 수사팀을 꾸려 할당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이 경찰수사 인력으로의 이동을 고민할 정도로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경찰수사 인력 구조와 보직 및 처우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의 추동도 그 방향성을 잃고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경찰도 검찰 못지않은 옵션이 될 수 있어야 책임수사의 인적 기반이 확보된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경간 수사의 진검승부에서 검(劍)의 크기는 이제 그다지 큰 변수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검을 다루는 검객의 실력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과 경찰의 수사관이 유치원부터 그 진로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고 귀하게 활용하는 조직에게 수사권을 둘러싼 승리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될 것이다. 지금 당장 승진만능의 경찰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문호를 활짝 열어 주요 로스쿨의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유치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향후 과제, 민주적 통제

이제부터 책임지고 수사하라며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인권침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마저 내심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소불위로 나아가려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과 인간이 역사 속에서 숱하게 학습해 온 불행한 기억들 탓이다.

'경찰 공룡화'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경찰의 불법수사나 부실수사에 대하여 그동안 검찰이 준사법적 통제를 하여 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수사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신으로부터 한 순간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945년의 해방과 독립이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듯, 정부수립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보다 완전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는 과정처럼 바야흐로 독립한 경찰수사는 앞으로도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국가수사본부의 창설을 통한 수사경찰의 분리,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등 감시 및 통제시스템으로서 차근차근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도 없다. 정권의 눈치 보기나 시류를 거스르려는 꼼수에 편승하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한길, 국민에게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든 혜택을 돌리는 초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한다. 만에 하나 늘어난 권한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그릇된 수사관행을 답습하여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경찰수사를 곧이 믿지 못하는 불신을 자초한다면 이는 이번 경찰의 책임수사 시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결정적 패착이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은

국가치안시스템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프레임의 대전환이다. 반드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경찰수사는 주로 민생범죄에 집중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생활 속 가렵고 아픈 구석을 속속들이 시원하게 긁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민생수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사경찰의 하심(下心)이 요구된다. 수사권을 멋들어지게 뽐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정치권력 등 언론의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사고이기 마련이다. 인사권한을 가진 고위경찰이 자의반타의반 범죄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과 개연성은 여전히 경찰수사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환경일수록 경찰수사는 고요 속에 마음을 내려놓고 국민과 사건현장에 한 발짝 바짝 더 다가서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수사의 날카로운 칼도 함부로 휘두르면 흉기가 되고 결국에는 제살을 베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제도를 보다 시민에게 개방하여 경찰수사에 시민참여의 폭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경찰 수사권과 민주적 통제권이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나와야한다. 비슷한 내용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이미 발족하여 활동해 온 것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 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공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PSI

경찰의 수사권과 인권보장



(사)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오 동 석 교수*

들어가며

마침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 기관의 관점에서 수사권 문제가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 침해 방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면은 없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다.

경찰은 검찰보다 앞서 인권 관련 제도를 설치했다. 2005년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발족했고,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에서야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대국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 등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래의 법령안 또는 정책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수정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전국 경찰 단위에서 인권 교육도 활발하다. 전국 확대를 목표로 '현장 인권상담센터' 도 시범 운영 중이다.

권한에 따라 책임은 비례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인권 보장 제도가 수사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몇 가지 주제를 정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이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고 공권력은 물론 모든 사람이 존중해야 할 규범이라는 점까지는 쉽게 동의한다. 문제는 인권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갈등 관계에 놓이는 구체적 상황에서 인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로 존중할 것인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제2항본문)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제2항단서)는 것은 진지한 고민이 적다. 인권 사안의 문제는 바로 그 경계의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과잉의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로 경찰관 징계를 권고했다. 특수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 조사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길질했다. 이후 대화 중 체포된 사람은 휴대전화 든 손을 휘둘렀고, 해당 경찰관은 이미 한 손이 수갑 찬 상태에서 다른 손마저 수갑 채웠다. 이러한 유사 상황은 한 차례 더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서 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경찰 장구 사용과 물리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대기실에서 체포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할 만한 행동이었다.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흡연이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체포된 사람은 이미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

한 손 수갑이 의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체포된 사람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추가 제한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조사대기실 내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소란 행위 역시 그렇다. 흡연과 소란 행위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조치했어야 했다.

인권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느낌은 다양한 이유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관행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규범은 변화한다.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이 잦아들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남성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젠더 폭력성이 구조화·내면화한 결과기도 하다. 의식적이고 변화를 꾀하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언행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인권을 안다는 것은 한 번의 교육으로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인권 침해적 언행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의식을 잃지 않는 것이고, 과거의 언행을 되풀이하지 않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다.

인권은 법보다 넓고 더 빠르게 규범화한다. 인권 교육이 필요한 까닭이다. 다만, 인권 교육이 아직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인권 가치의 전달과 이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랜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실천 교육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인권 교육은 한 사람의 강사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인권 관점에서 스스로 분석·평가하고 자기 교정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과 행동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스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 그중에서도 가장 권력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관이라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점에서 공직자의 인권 환경 역시 중요하다. 적정한 휴식권과 업무 스트레스의 완화 그리고 적정한 수사 환경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다. 이 모든 것이 쉽게 금방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국가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함께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는 나의 인권 보호와 연결해 있다. 그 연결 지점에 공직자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과 보장 의무를 지우고 있다(헌법 제10조제2문). 헌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한 인권 목록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의 관행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한편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자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다. 한국사회에서는 '특별권력관계론'의 명목으로 아직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나 노동권을 과잉 제한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인권은 길을 갈 때 방향을 잡는 북극성이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좌표다. 늘 변화 속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가치다.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규범과 현실이 변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다른 한편 인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인권 침해의 관계를 인식하는 문제다. 외국의 사례다. 갑(甲)과 을(乙)은 심장병이 있는 실업가 병(丙)을 납치했다. 그들은 丙의 친척들에게 고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丙은 늘 복용하던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납치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몸값을 치르는 절차가 시간이 걸려 풀려나서 심장약을 먹어도 너무 늦는다. 중간에 체포된 乙은

甲이 丙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있으나,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경찰은 乙을 고문하여 그것을 말하게 했다.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丙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찰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은 국가권력을 향한 규범이다. 일차적으로 공권력은 그리고 공권력 담당자는 인권 침해 금지의 책무가 있다. 한 사람의 생명권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고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권력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대 형사 절차에서 자백의 증거를 엄격하게 통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의 편의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전제군주 시대 공직자의 신분은 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 탓에 위태로웠다. 입헌민주주의 시대 공직자의 신분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 그러나 그만큼 공직자의 인권 준수와 윤리는 강하게 요청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만 있다는 그것은 특권이다. 오히려 공무원의 자부심은 명예다. 엄격한 헌법 규범과 윤리의 요청을 준수하면서 사적(私的) 이익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자긍심이다. 권력의 자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권은 그 용기의 원천이다. 권력의 행사에 따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인권 수호자로서 공직자의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것은 공직을 빛나게 하는 명예와 용기 그리고 존엄의 상징이다.

인권의 연결망과 환경

경찰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민원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리적인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무 집행에서도 한편에서는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걸맞은 법령과 관행의 정비 그리고 문화적 뒷받침이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권위적인 공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감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의 역사적 사건들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국민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인권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한번 잃은 신뢰는 금세 회복되지 않는다. 앞으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인권 보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할 문제다. 길게 보고 가야 할 길이다.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권 행사와 경찰권 행사에 대한 동료 사이의 인권 담론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는 경우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그것이 왜 인권 침해적인지 대화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권 상담과 인권 교육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가 없다면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의식의 전파 방안이다. 현장에서 발견한 인권 가치의 공유다. 인권 가치의 공유는 인권 가치의 확장이다. 그 결과 경찰이 수사권과 경찰권을 인권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환경, 즉 경찰공무원의 인권 보장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공감에 이른다.

나오며

인권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문제다. 서로의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보장된 인권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다. 공권력은 사인(私人) 사이의 인권 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인권 관계는 개인과 국가의 양자 관계가 아닌, 공권력과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삼자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인권 보장의 원칙은 개인과 공권력의 관계에서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자 준거로서 인권의 확인과 보장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판단과 실행이 쉽지 않다. 어려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은 좌절의 변명이 아니라 난관 극복의 의지를 위함이다. 한 번 물꼬를 열면

그 길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

이 글의 앞머리에서 인권 보장 제도를 예시했다. 수사권 행사에 따르는 사법 정의(司法 正義) 구현과 인권 보장에 필요한 인권 정의(人權 正義) 구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경찰 실무 현장에서 발언과 제안이 양 제도의 공존과 조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인권 제도를 두텁게 쌓아가고, 그 제도의 실질 내용을 다시 인권으로 채우는 일을 묵묵히 하면 될 일이다. 모두의 인권은 연결되어 있기에 누구나 기꺼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의 책임 수사 원년이 또한 당연하게도 경찰이 인권 수호자로서 도약하는 해이길 바란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 PSI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수사를 위한 제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 재 일 박사



들어가며

검찰은 수사권·영장청구독점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수사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하는 등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권력은 비대화되고, 그 비대화된 권력을 자신 또는 조직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국정과제 제1호로 검찰개혁을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한을 경찰에게 주어 수사의 주체자적 역할을 기대하는 개혁작업에 착수하였고, 2018. 6. 21.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라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을 토대로 성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

이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 폐지, 2)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3)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4)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동일화 등이다. 필자는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입법조사관으로 참석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검·경 각각의 기관 의견의 차이, 외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기관의 아전인수식 해석, 의원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통한 공개 논의 왜곡 정보 전달 등 수많은 난관들이 드리워져 있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통과 여부보다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채워질까 더 궁금해졌다. 이번 개정안들은 그 동안 수사현장에 형성되어 있던 검찰과 경찰 간 상하수직관계를 수평적 상호협력관계로 변화시키고 독립된 수사주체로서의 경찰권한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정이지만, 검경 간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된 현실을 그대로 법률로 옮긴 것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오던 검찰과 경찰 간 상하수직관계를 해체한 첫걸음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

1.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 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삭제하고, 범죄수사 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2)]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수단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검찰에게 부여하였다. 즉, 검찰은 1) 송치사건 중 공소제

1)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20. 1. 28.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0. 2. 4. 공포되었다. 다만, 시행일은 미정이다.

2)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수사 시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의무를 위한 수사준칙인 대통령령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유지 및 2) 영장청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중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찰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를, 시정조치 불이행 시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현행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1)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3) 앞의 1)과 2)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현재 수사실무에서 범죄의 95%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 검찰의 직접수사가 보통 특수범죄·공안범죄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수사실무의 현실을 법률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찰에게 수사의 우선권이 있다.(검사의 사건송치 요구권)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경합 시 검찰의 영장청구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3.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전건송치하여 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면 된다. 그 밖의 경우(즉,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9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한다. 경찰의 범죄수사 후 불송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을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첫째, 불송치 사건의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주체 간 증거능력 통일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작성주체에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동일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립진정'을,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내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인 '내용 인정'으로 변경하였다. 작성주체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력능력 차등은 그 동안 이중수사의 원인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3)]

3)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외국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서재판은 신속한 재판에는 기여하지만, 조서재판이 과거 규문주의 형사소송체계의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점,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취지 부합 대통령령 제정 시 고려사항

1. 상호협력에 기초한 대통령령 명칭 및 내용 구성

현행 검찰과 경찰 간 범죄수사 시 관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만큼 당연히 수사준칙의 명칭에서 '수사지휘'가 삭제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기초한 법률 조항을 개정 취지를 살려 대통령령에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법경찰관리의 관할지역 외 수사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환부·가환부 처분 또는 압수물 보관·폐기 시 검사의 지휘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변사자에 대한 검시 주체에 검사 이외에 사법경찰관도 포함시킬지 여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체포·구속장소 감찰에 따른 검찰 송치, 구속전 피의자신문, 체포·구속적부심 의견진술 주체,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 주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준칙 마련과 연결되어 시행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히 수사준칙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4)]

2.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명확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공소 제기 결정 또는 영장신청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 중 법령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경찰이 미이행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 시 또는 수사 후 경찰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금 맡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검찰 송치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이 불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이미 수사된 사건으로 '수사 개시'가 아닌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명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과정 중 잘못에 대하여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불명확하면 보완수사 및 시

4)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등 치안책임자의 사법경찰관 지위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법경찰관 아닌 자의 수사 지시라는 비판을 정면돌파하고 경찰의 책임수사를 위한 의지 표명이 될 것이다.

정조치 요구는 미이행 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검찰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동일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법 시행 이후 검·경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발화지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있었던 불합리한 근거에 기인한 사안들을 모아 검찰과 경찰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70년에 걸쳐 형성된 범죄수사 시 검·경 간 상하수직관계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상호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수사실무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지만, 그 동안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에 많은 혼란도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수사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사준칙 제정작업을 꼼꼼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조항, 경찰의 독자적인 책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은 수사패러다임 전환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수사실무에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 등 경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는 당시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번 개정논의에서도 회자되었다. 이번 개정논의에서는 검찰은 파쇼화되었으며, 검찰 파쇼를 더 이상 국민들은 참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더 이상 파쇼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다시금 과거의 경찰 파쇼로 돌아간다면, 개혁대상은 다시 경찰이 될 것이다. 수사의 주체성을 부여받은 경찰이 과거의 파쇼가 되거나 수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경찰은 검찰 대신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때에는 경찰에게서 '수사권한' 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12만 경찰공무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약 70년 만에 얻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안일함과 자만심으로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PSI

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 황 박사

들어가며

최근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회자된다. 동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문제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매우 높은 메신저 등의 온라인상 기술적 수단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성공적 범죄수사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범죄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그에 맞는 신종 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종 수사기법의 합법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비밀수사의 한 형태인 ‘온라인 수색’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같이 달리 범죄를 수사할 방법이 없다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보다 실효적인 범죄수사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온라인 수색을 입법화한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독일법상 온라인 수색 제도

1. 배경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내지 인터넷에서의 수사활동, 특히 비밀수사에 관한 기술적 법적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테러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독일은 그 어느 국가보다 온라인상의 비밀수사를 허용하는 입법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록 상급법원에 의해 그 제동이 걸리긴 했었지만, 연방법 또는 주법차원에서 이미 몇 차례 온라인상의 비밀수사 및 예방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적 시도가 있었고, 2017년 8월에 해킹을 수단으로 하는 온라인수색 등에 관한 규정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2. 개념

온라인 수색은[1]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타인의 IT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하여 해당 시스템의 이용을 감시하거나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기관으로 비밀리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2] 이러한 온라인수색은 다시 “온라인 검열”과 “온라인 감시”로 구분되는 데, 전자의 경우 일회성으로 타인의 IT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장기간 작동 중인 시스템의 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3] 독일에서 온라인 수색과 구별되는 것으로 “소스통신감청(Quelle-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이 있다. 이는 국가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T 시스템에 비밀리에 잠입한다는 점에서는 온라인 수색과 같지만 이를 통해 통신을 감청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전달 중인 통신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을 써서 중간에서 낚아채서 수집하면 소스통신감청에 해당하고 전달이 끝나 저장된 전

1) 온라인 수색 대신 “온라인 감시(Online-Überwachung)”라는 표현을 쓰기를 권장하는 견해, Ulf Buermeyer, Die „Online-Durchsuchung“. Technischer Hinter-grund des verdeckten hoheitlichen Zugriffs auf Computer- systeme, HRRS 2007, 154면 이하.

2) Hans Kudlich, Straftaten und Strafverfolgung im Internet - Zum strafrechtlichen Gutachten für den 69. Deutschen Juristentag 2012 -, StV 9·2012, 564면.

3)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원광법학」 제28집 제3호(2012), 154면.

자정보를 수집하면 온라인 수색이 된다.

기술적 관점에서 해킹프로그램으로 주로 "트로이 목마(Trojanische Pferde)"[4] 바이러스나 "백도어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토로이 목마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자의 컴퓨터에 비밀리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의 정보를 빼내어 전달받게 된다.

독일에서 80년대와 90년대에는 감염된 디스켓의 유통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심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한다.[5]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로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이용하는 것과 시스템의 보안약점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은 공격당한 컴퓨터에서 이메일 주소록을 검색하고, 여기서 우연히 선택된 송신인 이름으로 찾아낸 주소로 무작위로 발송된다. 그런데 보통은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이메일을 단순히 수신하는 것만으로는 수신자의 시스템의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신인이 마우스의 더블클릭을 통해 첨부파일을 열었을 때 감염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정보기술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6] 그 예로 몇년 전 세계 150개국의 23만개의 컴퓨터를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일명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을 들 수 있다.[7] 이러한 랜섬웨어는 2017년 4월 14일 "더 섀도우 브로커스(TheShadowBrokers)"라는 해커 그룹이 공개한 이터널블루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파일 공유에 사용되는 서버 메시지 블록(SMB) 원격코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시스템에 잠입하였다.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 시스템 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만 해도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침입이 성공하려면 시스템운영자가 이러한 약점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보완할 수 없어야 한다.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온라인 수색을 내용으로 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헌법보호법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였다. 여기서 동 재판소는 해당 주법률이 기본권 제1조 제1항과 연결된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그리고 제19조 제1항 제2문과 합치되지 않아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 결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기존의 "정보의 자기결정권(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개념만으로 개인의 인터넷상의 정보활동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였다. 즉, 기존의 정보활동 - 예를 들어 전화통신, 사진촬영, 인구조사에의 응답, 저작활동, 경찰단계에서의 신원확인 조치 - 등은 구두, 전화통신, 서면 등으로 행해졌고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였으나 인터넷의 경우 이들과는 통신방법, 전파성, 개인에 의한 정보의 통제가능성 등이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상당부분 틀리기 때문에 정보 혹은 정보활동의 보호와 관련해서 인터넷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는 1983년 인구조사판결로부터 도출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도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8]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고유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이른 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연결된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보기술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의 보장(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n)"이 새로이 인정된 기본권 개념이다. 이

4) 또는 짧게 "트로얀(Trojaner)" 혹은 "국가트로얀(Staatstrojaner")이라고도 한다. 후자의 표현은 Lisa Blechschmitt, Zur Einführung von Quellen-TKÜ und Online-Durchsuchung, StraFo 2017, 361면에서 등장.
5) Buermeyer, 앞의 논문, 155면 이하.
6) Blechschmitt, 앞의 논문, 362면 이하 참조.
7) Blechschmitt, 앞의 논문, 363면.
8) 박병욱, "경찰상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 - 2008. 02.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7권 제1호 (2009), 83면.

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은]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개별통신사안들 또는 개별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로서 침입되어지는 한 정보기술 영역에서 국가에 의한 침입으로부터 기본권향유자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을 보호한다" 고 하였다.[9]

이러한 새로운 IT 기본권은 기존의 정보적 자기결정권보다 그 침해의 폐해성이 더 크기 때문에 IT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해야 하는데 온라인 수색을 내용으로 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률은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을 입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실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법익으로 신체, 생명, 인간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기초와 존립 및 인간존재의 기초에 있어 중요한 일반적 이익을 들 수 있고, 생존을 보장하는 공공급부시설의 본질적인 부분의 기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10]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은밀한 침투는 개별 사안에서 특정 인물들에 의해 앞서 말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야기되었음이 특정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 그 위험이 근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11] 이 경우에 온라인 수색명령은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반드시 개인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12]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17년 독일 입법자는 온라인 수색을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를 신설하였다.

4. 요건

독일에서 온라인 수색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의 성립요건으로 제100조b 제2항에 기술된 중범죄(미수포함)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및 범죄인 수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제1항).

온라인 수색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만 허용되지만, 피의자가 제3자의 시스템을 이용했거나 제3자가 불가피하게 개입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제3항).

온라인 수색의 남용 및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온라인 수색은 그것이 데이터수집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고(제100조a 제5항 제2호 및 제100조b 제4항), 온라인 수색을 위해 필요한 조작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수사가 끝났을 때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하며(제100조a 제5항 제3호 및 제100조b 제4항), 적용된 프로그램은 기술상태에 따라 정당하지 못한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사된 데이터는 기술상태에 따라 변형, 부당한 삭제 그리고 부당한 인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100조a 제5항 및 제100조b 제4항).

마지막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명칭과 사용시점,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관한 정보와 여기서 행해진 조작, 수집된 데이터의 확인을 가능케 하는 정보, 집행기관을 기록해야 한다(제100조a 제6항 및 제100조b 제4항).

5. 절차

온라인 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검사의 명령에 대해

9)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 – 1 BvR 370/07 – Rn. 201.
10)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 – 1 BvR 370/07 – Rn. 247.
11)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 – 1 BvR 370/07 – Rn. 251.
12)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27. Februar 2008 – 1 BvR 370/07 – Rn. 257 ff.

3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 명령은 실효한다. 명령은 3개월간 유효하고,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명령의 요건이 존속하는 한 3개월 이내의 연장은 가능하다(제100조e 제1항). 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제2항). 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른 조치들은 즉시 종료하고, 명령을 내린 법원은 그러한 조치의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해 통보받는다(제5항).

온라인 수색을 통해 얻은 인적 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수색을 명할 수 있는 범죄를 밝히거나 그러한 범죄로 혐의를 받는 자의 소재지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위험방지 목적을 위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국가의 안전 및 존립에 대한 위험, 나아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경찰조치로 수집된 인적 정보는 온라인 수색을 명할 수 있는 범죄를 밝히거나 그러한 범죄로 혐의를 받는 자의 소재지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시사점

국가수사기관이 소위말해 반칙적 수법인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사한다고 하면 일응 일반 시민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수사 및 예방을 위해 이러한 수단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이든 비밀수사를 부정해야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온라인 수색규정과 비교될 수 있는, 즉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06조 제3항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무에서 제기되는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적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이 실무상 암암리에 독일에서 말하는 온라인 수색을 행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수사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들 기관이 입법불비를 이유로 해야되는 수사를 부작위 한다면 이 또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입법자는 학계에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높은 이러한 수사방법을 수사실무자를 위해 마련해주었다. 물론 최근에 개정된 법률도 조만간 독일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독일 입법자는 실무에서 제기되는 입법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부러운 대목이다. PSI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경위 김 달 원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지난 1월 14일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제6회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하여, 매년 여성·아동 인권 신장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여성·아동 대상 범죄 근절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예로운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을 축하하는 한편, 책임수사원년을 맞아 인권친화적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수사관의 짧은 인터뷰를 게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아동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는 김달원 경위입니다. 저는 1991년도에 경찰에 몸을 담은 후 수사부서에서 주로 근무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월부터는 강원청 여성청소년수사계로 자리를 옮겨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수사를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사면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아 업무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제6회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뛰어 다니시는 모든 수사관들을 대표하여 저희 팀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며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집니다.

◉ 이번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해 도내 모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개별 또는 집단으로 간음하거나 심지어 그 성폭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피의자들은 그 지역 선·후배 사이인 중,고생 및 자퇴생으로 모두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전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었죠. 당시 그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내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고 피해사실을 함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후유증으로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설득한 끝에 가해자들을 모두 밝혀 결국 4명을 구속하였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사 표현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술을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죠. 더구나 피해자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여 저희로서는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아동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피해후유증을 겪고 있어 우선 병원에 입원토록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주치의를 통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아동과의 라포형성(rapport building)을 하였고 결국엔 피해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용기를 내도록 하는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특히 인권친화적 수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 오랜기간 피해가 지속됨에도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건처리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평소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지원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히 어떠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시는지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 후 보복을 당할까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사례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범죄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적·실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구분없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일부 법률의 미비로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속도만큼이나 발 빠른 법률의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선 동료(선후배) 경찰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리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 오고 있음에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악역을 도맡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묵묵히 근무하다보면 점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은 업무로 인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이제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찰관 생활의 포부를 부탁드립니다.

스물이 갓 넘은 나이로 경찰학교에 입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차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경찰관이 마음속 깊이 새겼던 사명감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남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PSI

연구소 동정

▣ 치안전망 2020 발간



치안정책연구소는 2020년 9번째 '치안전망'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치안전망 2020」은 새롭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2020년의 치안상황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치안정책연구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안전망 2020」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7편의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여 3월 31일자로 발간됩니다. 게재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PSI

연번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논문
1	청소년 비행요인에 관한 성별 간 차이
2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윈도 저장소 공간 복원율 향상방안
4	안보위해 사건에서 전문법칙 완화 적용문제
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구성요소별 현장조사 연구
6	음주 시동잠금장치 입법방안
7	지능정보사회 치안환경의 변화와 대응

▣ 치안정책연구소 2020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치안종합 연구기관으로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새로운 치안 트렌드에 맞춰 효율적인 경찰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SI

2020년도 책임연구 과제

1	한국경찰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4종)
2	절차적 정의 교육훈련 효과성 분석 : 경찰인재개발원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4	지역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에 따른 장구사용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5	위기청소년 조기감지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6	기업·금융범죄 억제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수사정책 방안 연구
7	범죄분석요원 업무 분석 및 효율화 방안
8	디지털증거법의 발전 동향과 입법과제
9	(안보수사 본부 설치 대비)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강화 방안
10	북한 형사 사법제도 연구 -북한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11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12	한국경찰조직문화진단 : 척도개발을 중심으로(1단계)
13	지역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및 적정 인력 연구

2020년도 정책연구 과제

1	경찰대학 개혁에 따른 대학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	수사부서 과·팀장 역할·책임한계 및 지휘역량 제고 방안
4	고소·고발 선별입건관행 개선 연구
5	전화금융사건 근절을 위한 지연출금제 확대 도입 연구
6	범죄 수사의 증거 수집과 판단 과정에 대한 검증 모델
7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 연구소 직원 전입

효과적인 치안행정에 대한 증대된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실무 역량을 갖춘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치안정책연구소에 전입하였습니다. 한층 강화된 인적·물적 연구역량에 기반하여 정책연구 및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보직	전입자
소장	손장목 경무관
기획운영과장	조재광 총경(승)
기획운영팀	하만원 경정(계장), 임경원 경감(승), 송경호 경위, 최형모 경사, 강보람 경장
국제경찰지식센터	김형훈 경감(센터장), 김태형 경감
정책연구관리팀	서현정 경장
R&D 기획평가센터	김찬원 경감(부센터장), 신상화 경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민휘경 경사(승)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논문모집 공고

□ 학술등재지 논문모집

○ 공모 기간
- 2020. 4. 2.(목)~ 5. 15.(목)
  ※ 2020년 6월 30일 발간 예정

○ 논문 주제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교통, 안보, 외사, 치안과학 등 경찰 관련 분야

○ 투고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 이상, 치안 관련 연구원 및 대학원생, 경찰실무자 등

○ 기타 사항
- 논문은 200자 원고지 140매 내외(글자크기 함초롱바탕 10.5P, 각주 9P)
- 내·외부 전문가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 지급(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

※ 투고논문은 다른 매체 또는 지면(학위논문, 용역과제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 문의처
- 치안정책연구 편집간사 (041-968-2591)

☆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치안정책리뷰」 원고 모집 공고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5월 15일까지 접수)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곳
- e-mail : chajj76@police.go.kr
- 메신저 등 :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041-968-2794)

□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 차종진 연구관 / 윤철희 연구관

Police Science Institute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